#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78 발의연월일: 2021. 10. 26.

발 의 자:이형석·조오섭·문진석

이용빈 · 유정주 · 윤영덕

한병도 · 오영환 · 홍익표

서영교・안규백・이병훈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·대응·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 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하였음.

그런데 '지구단위종합복구'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(정의)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. 특히 '지구단위종합복구'계획 수립' 대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, 피해지역 내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,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복구지원체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건 개념이 부재하여종합적 복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아울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·범람 등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및 참여기술자 자격 조건이 부재하여 양질의 조사·작성이 곤란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위탁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필요가 있음.

이에 '지구단위종합복구'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, 피해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8호, 제38조제1항제4호의3, 제46조의3제1항).

###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"지구단위종합복구"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, 지형적 특성, 시설물 간 연계성,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

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자치단체의"를 "재난관리책임기관의"로, "후 지방자치단체"를 "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"제4호"를 "제5호"로 한다.
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17. (생 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8. "지구단위종합복구"란 자연
	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
	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
	지역, 지형적 특성, 시설물 간
	연계성, 피해지역 재난회복력
	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
	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.
제38조(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	제38조(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
행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	행) ①
"방재관리대책 업무"라 한다)를	
수행하는 자는 기초·타당성 조	
사, 분석, 기본·실시 설계 등	
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	
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이하	
"대행자"라 한다)로 하여금 대	
행하게 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의3.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
	<u>도 작성</u>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
#### ② • ③ (생 략)

제46조의3(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(이하 "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제1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에서 규 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 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②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제46조의3(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	
수립) ①	
재난관리책임기관의	
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-	
•	
1 ~ / (청해고 가으)	
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가여게체로 이치어 새화이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	
5.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 지역으로 서 피해 지역의 재생,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	

② (현행과 같음)